

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07.12.24	개정 2023.03.15
개정 2009.09.04	개정 2023.12.29
개정 2011.08.16	개정 2024.03.13
개정 2014.01.21	개정 2025.03.17
개정 2017.04.11	
개정 2018.03.01	
개정 2019.06.25	
개정 2020.03.18	
개정 2021.02.17	
개정 2022.08.25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각 위원회의 구성·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21., 2025.3.17.>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,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7.4.11.>

② 각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<개정 2018.3.1., 2019.6.25.>

③ 재단의 각 위원회는 본부장의 발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, 2020.3.18.>

④ 위원은 시 의회 의원과 청소년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로 구성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<신설 2019.6.25.>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·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

⑦ 위원회 심의·의결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6.25.> <개정 2021.2.17.>

⑧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

제3조(위원회의 업무) ① 각 위원회는 재단의 경영과 정책의 수립, 시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본부에 통보한다. <개정 2017.4.11., 2020.3.18.>

② 본부는 제1항의 사항을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재단 업무에 반영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8.>

제4조(회의 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회의방식은 대면 및 동시적 양방향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다. <개정 2022.8.25.>

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 또는 총괄매니저로 하며, 서기는 해당업무 직원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16., 2017.4.11., 2023.3.15., 2024.3.13.>

③ 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
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대면심의·의결을 원칙으로 하고, 대리 심사를 금지한다. 단,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

⑤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신설 2022.8.25.>

제6조(인사위원회 구성) ① <개정 2009.9.4> 삭제 <2011.8.16>

② 삭제 <2009.9.4>

제7조(인사위원회 임무) 삭제 <2011.8.16>

제8조(인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) 삭제 <2011.8.16>

제9조(인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) 삭제 <2011.8.16>

제10조(감사 등 출석) 삭제 <2011.8.16>

제11조(보고 및 재심의 등) 삭제 <2011.8.16>

제12조(위원 해촉·해임)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>

②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척·회피·기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

제13조(회의록) ①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16., 2018.3.1., 2019.6.25.>

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

제14조(회의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별표”와 같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의 위원 중 재단의 임직원이나 성남시 공무원은 담당사무수행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수당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6.25., 2021.2.17.>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관련법, 성남시 각종 조례와 재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07.12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재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09.9.4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8.16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1.2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4.1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3.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6.25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3.18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2.17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8.25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3.15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12.29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3.1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3.17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7.4.11., 2023.12.29.>

위원회 회의수당

(단위 : 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회 당	• 2시간 이내: 100,000원 • 2시간 초과: 150,000원	